

『2016년도 세출예산 (재)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2016년도 세출예산 (재)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계획

- 출연 예정액 : 금150백만원
- 출연 필요성
 - 새마을운동의 성공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인류공동번영에 기여
 -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와 삶의 질 향상
- 출연근거법령 :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 제3조(출연금의 지급 등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 제3조

○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새마을운동의 성공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인류공동번영에 기여코자 설립된 (재)새마을세계화재단에 2016년도 세출예산 150백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검토결과

본 동의안은

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지구촌의 빈곤퇴치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가 주 출연자가 되어 2013. 1월 출범한 (재)새마을세계화재단에 2014년(150백만원), 2015년(150백만원)에 이어 2016년에도 150백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부터 시작한 스리랑카 해외 시범마을 조성 사업으로 화장실 설치와 새마을 조직 및 환경 교육, 봉재사업 등 소득증대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, 새마을운동 중흥지인 구미시가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